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11.

제 안 자 : 외교통일위원장

수정이유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기념일에 적합한 다양한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삭제함.

수정주요내용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아니하고,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이 없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함(안 제11조의2제2항 및 부칙).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
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의2제2항 중 “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할 수 있고, 사업 방법
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”를 “행사, 교육 및
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”을 “공포한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설></u>	<u>제11조의2(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) ① 납북자를 추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한다.</u>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,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부칙 <u>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	제11조의2(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부칙 -----<u>공포한</u>----- ----- -----.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3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4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우재준 · 백종현
한기호 · 유영하 · 유용원
김 건 · 김형동 · 김종양
권영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은 6·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. 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·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,456명이며, 전시납북자로 심의·의결한 건은 총 4,777명에 달함.

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. 북한에 의해 납치된 10만여 명의 납북자와 그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.

이에 6·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,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‘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’로 지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

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필요한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삭제하고, 해당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제2항).

나.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(안 부칙).

법률 제 호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) ① 납북자를 추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) ① 납북자를 추모 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·25 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한다.</u>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· 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에 적합한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